

승급 및 호봉획정

1 호봉획정

가. 관련법령

- 1) 공무원 보수규정(대통령령 제35181호, 2025. 1. 3. 시행) (이하 ‘영’)
- 2)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(인사혁신처예규 제192호, 2025. 1. 23. 시행) (이하 ‘보수지침’)
- 3)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(교육부예규 제88호, 2024. 3. 22. 시행) (이하 ‘예규’)
- 4)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(교육부령 제285호, 2023. 3. 1. 시행)(이하 ‘인사사무 규칙’)

나. 호봉 개요

- 1) 호봉(號俸) : 직계, 연공(年功) 등을 기초로 하여 정해진, 급여 체계 안에서의 등급
- 2) 호봉 획정의 3요소(영 제8조 및 별표 15) : 학력, 자격, 경력
- 3)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: 교육장(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)

다. 초임호봉 획정(영 제8조)

- 1) 대상 : 신규 채용되는 교육공무원
- 2) 시기 : 신규채용일
- 3) 절차 및 방법

